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74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한정애·박홍근·서영교

신정훈 • 박홍배 • 송옥주

허종식 · 조인철 · 이재강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자신의 연령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식당, 카페, 호텔 등 장소에서 아동의 소음이나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연령을 이유로 아동을 차별을 받지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노키즈존의 확산은 대중으로 하여금 아동이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여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해당됨.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문화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조제7호, 제75조제2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 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 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 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 대하여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 별하는 것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아동 차별 금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을 해당 재화·용역 등의 이용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제2항 중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

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을 재화·용역 등의 이용에서 배제한 자
- 2.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	7 <u>다음 각 목</u>
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u>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u>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	
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	
<u>임하는</u> 것을 말한다.	
<u><신 설></u>	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u>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u>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u>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u>
	<u>혹행위를 하는 것</u>
<u><신 설></u>	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u>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u>
<u><신 설></u>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
	대하여 편의 제공을 거부
	<u>하거나 차별하는 것</u>
7의2. ~ 11. (생 략)	7의2.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 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제17조의2(재화 · 용역 등의 제공 에 있어서 아동 차별 금지) 재 화 · 용역 등의 제공자는 정당 한 이유 없이 아동을 해당 재 화 · 용역 등의 이용에서 배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1.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 한 이유 없이 아동을 재화・ 용역 등의 이용에서 배제한 자
- 2.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 인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 의 장
- ③ ④ (현행과 같음)